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9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유의동 · 안철수 · 이준석
박정하 · 박충권 · 박준태
유용원 · 김형동 · 우재준
배준영 · 박수영 · 한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

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추징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12 주한미군</u> <u>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을 위한</u> <u>조세특례</u> <u>제121조의36(공여구역주변지역</u> <u>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u> <u>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u> <u>특례) ① 내국법인이 2029년 1</u> <u>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u> <u>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u> <u>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u> <u>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u> <u>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u> <u>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u> <u>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분</u> <u>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u> <u>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u> <u>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택으</u>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u> <u>택(이하 이 조에서 “주한미군</u> <u>주거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u> <u>보유하는 경우 그 주한미군 주</u> <u>거용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u>

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
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을 적용받
은 내국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추징
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